교 육 비 납 입 증 명 서

			平 专 5	기답입	5	S ~	1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신청인	⑥ 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소	<u> </u>										
대상자	⑨ 성민	⑨ 성명					⑩ 신청인과의 관계					
			1.	교육비 부담	남 명	세						
⑪ 납부연월		⑫ 종 류	⑩ 종 류 ৩3 구 분			⑤ 장학금 등(B) 학비감면 등 직접지급		액	⑩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A-B)			
·												
•												
계												
		I	II	. 교복 구입	명서							
⑪ 구입연월		(18)	품 목	⑪ 수 량	⑩ 단 가			② 금 액				
•												
•												
•												
 계												
사용목적 교육비공제 신청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비를 지출하였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외	라 같이 I	고육비를 지휘	출하였음을 증명	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 작성대상자: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기관 등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중·고등학생에게 교복을 판매하는 사업자
- 1. "신청인" 란에는 교육비를 지출한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2. "대상자" 란에는 지출된 교육비의 수혜자를 적습니다.
- 3. "I. 교육비부담명세"란에는 교복구입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에 한정함)은 "II. 교복구입명세"란에 적습니다.
- 4. "⑫ 종류" 란에는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법에 따른 학교, 대학교, 전공대학, 원격 대학, 학위취득과정,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장애인재활교육기 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한국장학재단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5. "⑬ 구분" 란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료, 현장체험학습비, 특별활동비*(단,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 특별활동비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에 한정함), 보육비용, 장애인특수교육비, 학자금상환액, 그 밖의 교육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는 포함하되,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는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 6. 해당 연도에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2항에 따라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학비를 감면받았거나 계좌입금 등으로 직접 지급받았는지를 불문하고 그 장학금 등의 합계액을 ⑤ 장학금 등의 수혜액란에 모두 적습니다.
 -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 나.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 다.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 라.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 마.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 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
 - 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6 제9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
- 7. "⑭ 총교육비(A)" 합계금액이 "⑮ 장학금 등의 수혜액" 합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⑯ 교육비부담액(C=A-B)"란에 "O"을 적습니다.
- 8. 중・고등학생 교복 판매업자는 교복(체육복 포함)구입 명세를 Ⅱ. 교복구입명세란에 적고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합니다.